

한·EU 동등성 인정 협정문(한국 측 서신)

2014.12.19

총국장

Jerzy Plewa

Jerzy Plewa 총국장님 귀하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EU 집행이사회 규정 (EC) No 834/2007, 집행위원회 규정 (EC) No 889/2008 및 집행위원회 규정 (EC) No 1235/2008(이하 “EU 유기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기 생산, 표시 및 관리에 관한 EU의 유기시스템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 유기식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EU 유기규정에 적합하게 생산되고 가공된 가공식품은 2015년 2월 1일부터 한국 유기식품법의 요구사항과 최소한 동등한 생산·가공 관리 요건 및 기준에 따른 유기인증시스템에서 생산·가공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속서 1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EU 유기규정에 적합하게 생산, 가공되고 한국 식품공전 1.2.29항에 규정된 가공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2015년 2월 1일부터 3년 동안 한국의 유기식품법에 따라 생산 및 가공되었다고 간주됩니다. 이들 제품은 부속서 1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집행위원회 규정 (EC) No 889/2008에서 정한 EU 유기로고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로고 표시까지 포함해서 한국 내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판매, 표시 또는 표현될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 협정은 집행위원회 규정 (EC) No 1238/2008의 부속서 III에서 대한민국을 제3국 인정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완료됩니다.

인정기간의 연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될 것이며, 한국과 EU간의 향후 양자협정에서 다루게 될 것 입니다.

최희종

식품산업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세종시

부속서1

A. EU 제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한국 식품공전 1.2.29항에서 정한 “가공식품”으로, 유기원료를 최소한 95% 이상 함유해야 하고, EU산 그리고/또는 EU 유기규정에 따라 EU로 수입된 유기 농산물 원료를 사용하여 EU 내에서 최종 가공이 이루어져야만 함. ;
 2. “EU 유기규정”에 따라 유기로 인증 받아야만 함 ;
 3. 금지된 농약, 방사선 조사처리 및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포함한 집행이사회 규정 (EC) No 834/2007의 제III 장에 따라 금지된 물질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 및 가공된 것임을 EU가 검증한 것이어야 함 ; 그리고
 4. 한국 내에서 금지된 물질과 방법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유기생산기준에 대한 부적합의 위험에 대한 일반평가에 기반한 잔류물질 시험요구 사항을 적용받고,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제31조에 따른 후속규제 조치를 받게 됨.
- B. 상기 A항에 해당되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한국에 수입되는 EU 제품(이하 “EU 유기가공식품”이라 한다)은 한국 농식품부 유기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해야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MAFRA) 유기로고 또는 EU 유기로고나 이들 모두를 표시 할 수 있다.
- C. 한국으로 수입되는 EU 유기가공식품은 이 부속서의 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 집행이사회 규정 (EC) No 834/2007의 제27조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할 당국/기관이 발행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 유기가공식품 수입 증명서를 동봉해야만 한다.
- D. 회원국의 국가 인정기관은 참조표준으로 ISO 17011을 적용하여 집행이사회 규정(EC) No 834/2007의 제27조에 따라 승인된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심사를 수행한다.

E. 유럽집행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통지한다. :

1. 집행이사회규정(EC) No 834/2007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리 당국/기관에 관한 변경사항; 그리고
2. 이 부속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 및 지침의 개정(안)과 최종 개정사항

F. 한국의 사전통지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NAQS”라 한다) 당국자로 하여금 관련 집행 구조와 관리 당국/기관이 EU 유기 규정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EU 내에서 정기적인 현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관리 당국/기관, EU 집행위원회, 회원국의 관할 당국, 인정기관 및 EU내에서 인증을 받은 생산 및 가공시설의 사무소 방문을 포함한 이러한 현장 동등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NAQS 모두에 협력하고 지원한다.

G. EU 집행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매년 다음의 문서를 제공한다. :

1. 이 부속서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된 EU 유기가공식품의 유형과 수량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 ;
2. 모든 관리감독 또는 심사과정에서 EU가 파악한 부적합의 유형, 그리고 부적합이 시정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당국이 취한 조치가 포함된 보고서; 그리고
3. 집행이사회 규정 (EC) No 834/2007의 제27조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리 당국/기관 목록.